

# 규정/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

관련 항목:	ABA-RB, ACA, ACA-RA, ACF, ACF-RA, ACH, ACI, ACI-RA, BLB, COC-RA, GAA, GBA-RA, GKA-RA, IGT-RA, JHF, JHF-RA
책임 부서:	Office of the Chief Operating Officer;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

## 직장에서의 괴롭힘/불링 Workplace Bullying

### I. 목적

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(MCPS) 존중하는 조직 문화에 대한 헌신

이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/불링을 예방, 조사, 교정하는 구조를 명시한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 정책 AH, 직장 내 괴롭힘/불링(*Workplace Bullying*)를 적용하여 불링 예방, 인지, 신고, 조사,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책정합니다.

### II. 배경

교육위원회는 업무환경, 직장 내 괴롭힘/불링을 용납하지 않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간과하지 않습니다. 모든 불링/왕따는 *문화존중협약(Culture of Respect Compact)*<sup>1</sup>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며, 교육위원회의 주요 가치로부터의 구조적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. 직원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단체 안에서의 행동에서 이해, 존중, 긍정적인 상호관계에 이바지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.

### III. 정의

<sup>1</sup> *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* 와 *Montgomery County Education Association,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Local 500, Montgomery County Association of Administrators and Principals* 간의 존중의 문화 협약(*Culture of Respect Compact*) (이후로 존중의 문화협약(*Culture of Respect Compact*)로 표기)

- A. A *불만/이의제기(complainant)*는 행동이 해당하는 법, 교육위원회 정책 또는 MCPS 규정 또는 규칙에 요구하는 행동에 상반한다고 직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.
- B. D. *관계자(party in interest)*는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/사람들,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, 또는 불만, 이의제기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/사람들을 포함합니다.
- C. *직장 내 괴롭힘/불링(Workplace bullying)*이란 반복적, 고의적이며 상처를 주는 학대 또는 잘못된 대우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언어적, 신체적,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한 명 이상의 직원이 한 명의 직원이나 한 명 이상의 직원들에 대해 행하는 것으로 이에는-
  - 1. 교육위원회 정책 *ACA, 차별금지,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(Nondiscrimination, Equity, and Cultural Proficiency)*에서 명시된 실제 또는 예상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해 행해지거나
  - 2. 위협 또는 협박할 경우. 이와 같은 일이 직장과 또는 고용 기간 중에 이루어질 경우
  - 3. 충분히 심각하거나 만연하여 개인의 업무환경에서의 상태를 바꾸게 할 경우

이 행동들은 직접 개인에게 이루어지거나 전자로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모든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, MCPS 소유지 내와 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과 의사소통이 포함됩니다.

직장 내 괴롭힘/불링은 수퍼바이저가 직장부하에게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끼리 또는 직장 부하가 수퍼바이저에게 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/불링의 예로는 굴욕, 위협, 업무 방해 행위가 포함됩니다. 직장 내 괴롭힘/불링은 개인의 신체 또는 정신적 안녕이나 근무성적, 승진의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**IV. 행정절차**

- A. 인식과 예방
  - 1. MCPS는 직장 내 괴롭힘/불링, 위협, 희롱의 만연함,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것입니다. 예방 방법과 정보활동을 통해

MCPS의 직원 행동지침(*Employee Code of Conduct*)과 e 존중의 문화 협의(*Culture of Respect Compact*)를 지지하여 전문적이며 동료 간의 존중하는 행동을 기대합니다.

2. MCPS는 직장 내 괴롭힘/불링을 인지, 예방, 개재, 수정에 관해 직원과 일반에게 자료를 배부할 예정입니다.
3. 직장 내 괴롭힘/불링 예방 정보, 전문적 개발과 트레이닝은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구 전체 트레이닝에 포함되어 있으며 직장에서의 괴롭힘/불링의 인식, 예방, 개재, 수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/불링에 관한 해당 법과 정책이 준비될 예정입니다.
4. 필요에 따라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(OHRD),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(DCI)가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.

B. 신고

1. 직장 내 괴롭힘/불링을 목격한 MCPS 직원은 누구나 즉시 학교장/수퍼바이저 또는 적절한 직장 관리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. DCI는 직원과 수퍼바이저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/불링 신고, 조사, 후속절차를 알리는 지침을 필요에 따라 개발할 예정입니다.
2. 이의제기가 이의 제기자의 수퍼바이저나 이의 제기자의 위치에 관련된 권한이 있는 사람이거나 직장 내 수준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, 직원 또는 목격자는 직접 MCPS Form 230-39, *Complaint of Discrimination or Workplace Bullying*를 작성하여 DCI, human resources compliance officer에게 제출하거나 DCI@mcpsmd.org로 이메일을 할 수 있습니다.
3. MCPS는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원 및 제삼자의 주장을 포함한 신고의 조사와 해결에 대해 적절한 법과 MCPS의 책임에 따라 일관적으로 비밀을 유지, 조사, 적용합니다.
4. 성실하게 직장 내 괴롭힘/불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성에 참여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협조함으로 개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지지 않습니다.

## C. 조사

1. 주장되는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/불링인지를 결정하게 될 때, 주장되는 사건이 일어난 전후 사정을 포함한, 전체 상황 모두의 사건 기록을 고려해야 합니다.
2.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, 이해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다른 개인을 동반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<sup>2</sup>
3. 근무일 60일 이내에 인사과 담당자(*compliance officer*)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–
  - a) 불만 사항을 검토하여 본 규정에 따라 검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, 해당되는 경우,
  - b) 혐의를 조사하고, 결정을 내리고, 관련자들에게 이를 통지합니다.
4. 검토 결과, 신고자가 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불만 사항은 불만 사항에 명시된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반환됩니다.
5. 인사과 담당자(*human resources compliance officer*)는 당사자들에게 연장된 일정과 근거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제공하는 경우,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## D. 장 내 괴롭힘/불링 결정에의 이의제기

1. 담당자의 결정은 규정 *Regulation ACA-RA, Nondiscrimination, Equity, and Cultural Proficiency, section IV.B.4*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최고 운영 책임자(*chief operating officer*)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.
2. 직장 내 괴롭힘/불링 신고는 *MCPS Regulation GKA-RA, Administrative Complaint* 에 정해진 행정적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.

## E. 개선 조치

---

<sup>2</sup> "선택한 다른 개인"에는 직원과 동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직원단체 교섭부서의 대표가 포함됩니다.

1. 개선과 향상 조치는 *MCPS Employee Code of Conduct* 와 적절한 개선 조치 동의 또는 *MCPS*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.
2. 직장 내 괴롭힘/불링을 행한 직원, 보복행위와 앙갚음에 관련된 직원 그리고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전한 직원의 처분 및 결과는 *MCPS* 에 따라 적용됩니다. 징계조치에는 구두, 서면 질책, 전문적 카운슬링, 재배치, 강등 또는 좌천, 정직과 해고가 포함됩니다.

F. 비직원 불링/왕따

1. 직원은 전문적이며 도움을 제공하는 태도로 일반 사람들을 대합니다. 그러나 모든 직원은 직장에서의 소통과 관계에서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2. 직원의 일반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가 직장 내 괴롭힘/불링 수준이 될 경우, 수퍼바이저에게 이를 알리기를 권장합니다. 수퍼바이저는 직원을 지지하여 *MCPS*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/불링 문제의 해결을 도와야 합니다. 수퍼바이저는 *DCI* 및/또는 *Office of School Support and Well-being*에 연락하여 직원이 아닌 사람과의 상호관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*MCPS*는 직장 내 괴롭힘/불링과 관련된 *Maryland* 법에 대해 직원들에게 알리며 또한, *MCPS* 소유지 내, 외에서 발생하는 대면 또는 또는 전자통신을 포함한 모든 통신 수단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닌 사람(비직원) 관련 사건에 대한 지침과 자료를 제공합니다.

*Maryland* law, *MCPS* Regulation ABA-RB, *School Visitors*, *MCPS* Regulation COC-RA, *Trespassing or Willful Disturbance on MCPS Property*의 경우, 필요하다면, *MCPS* 비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/불링 문제의 경우로 간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G. 다른 해결법

이 규정에서의 내용은 다른 교육위원회 정책, *MCPS* 규정, 카운티, 주, 연방 법 또는 규정 하에 제공하는 권리, 권리의 실현 방법, 변상 또는 행동의 이유를

제한하거나 저촉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온전한 권리, 권한 또는 MCPS의 해당하는 법, 규칙, 절차를 제어, 감독, 관리하는 의무와 책임을 면제하는 권리나 결정권을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.

**관련자료:** *Culture of Respect Compact;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Employee Code of Conduct; Annotated Code of Maryland, Education Article, §6-901 through §6-906, and §26-101*

**규정 변경사:** 새 규정 2016년 6월 29일; July 24, 2017년 7월 24일 비독립적 개정; 2023년 3월 14일 개정.

# MCPS 차별금지 성명

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(MCPS)는 인종, 민족, 피부색, 조상, 출신국, 국적, 종교, 이민상태, 성, 성별, 성 역할, 성 표현, 성 취향, 가족 형태/부모 상태, 결혼 상태, 나이, 능력 상태(인지, 사회/정서, 신체), 빈곤, 사회경제적 상태, 언어,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차별은 우리 모두를 위한 형평성, 포용성, 수용을 창출, 육성 및 촉진하려는 우리 커뮤니티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. 교육위원회는 증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상당한 방해로 일으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언어의 사용과/또한 이미지와 표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, 차별금지,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(Nondiscrimination, Equity, and Cultural Proficiency)을 봅시다.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,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. 이 정책은 또한, 공평성이 내재적 편견,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,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구조적,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. MCPS는 또한, 보이스카우트/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.\*\*

MCPS 학생*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*	MCPS 교직원*에 대한 질문 또는 불평사항*
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, Room 55, Rockville, MD 20850 240-740-3215 SWC@mcpsmd.org	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, Suite 2500, Rockville, MD 20850 240-740-2888 DCI@mcpsmd.org
<b>1973년 504 장애법(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)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용</b>	<b>미국 장애인법(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)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용</b>
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Academic Officer Resolution and Compliance Unit 850 Hungerford Drive, Room 208, Rockville, MD 20850 240-740-3230 RACU@mcpsmd.org	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, Suite 2500, Rockville, MD 20850 240-740-2888 DCI@mcpsmd.org
<b>학생 또는 교직원*에의 성희롱 등,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</b>	
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850 Hungerford Drive, Room 55, Rockville, MD 20850 240-740-3215 TitleIX@mcpsmd.org	

\*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: U.S.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(EEOC), Baltimore Field Office, GH Fallon Federal Building, 31 Hopkins Plaza, Suite 1432, Baltimore, MD 21201, 1-800-669-4000, 1-800-669-6820 (TTY);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(MCCR),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, 6 Saint Paul Street, Suite 900, Baltimore, MD 21202, 410-767-8600, 1-800-637-6247, [mccr@maryland.gov](mailto:mccr@maryland.gov); 또는 U.S. Department of Education, Office for Civil Rights (OCR), The Wanamaker Building, 100 Penn Square East, Suite 515, Philadelphia, PA 19107, 1-800-421-3481, 1-800-877-8339 (TDD), OCR@ed.gov, 또는 [www2.ed.gov/about/offices/list/ocr/complaintintro.html](http://www2.ed.gov/about/offices/list/ocr/complaintintro.html).

\*\*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.

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 복지법 (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)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, 전화번호 240-740-2837, 1-800-735-2258 (Maryland Relay) 또는 [PIO@mcpsmd.org](mailto:PIO@mcpsmd.org)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.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, 240-740-1800, 301-637-2958 (VP) 또는 [mcpsinterpretingservices@mcpsmd.org](mailto:mcpsinterpretingservices@mcpsmd.org) 또는 [MCPSInterpretingServices@mcpsmd.org](mailto:MCPSInterpretingServices@mcpsmd.org)로 연락합니다.